

의안번호	제 627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6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병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5월 31일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7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 의 자 : 최병윤,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이연구,
이광진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법률」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 나. (생 략)</p> <p>다.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p>

관련법령 발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개정 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